

참고

신구 대조표

※ 본문 쪽수 표시

구분(쪽수)	내용
명칭 변경	○ 사업 명칭 일괄 변경(RISE* → 앵커**) * Regional Innovation System & Education(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) ** 앵커(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)
적용 범위 및 활용 (1쪽)	(추가) ○ 이 지침은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) 구축·지원 사업비의 산정 및 관리·사용·정산 전반에 적용됨 ※ 상위 지침인 '교육부 앵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'이 변경될 경우, 경기도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변경된 상위 지침을 우선 적용함 ○ 사업수행 대학은 교육부의 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 규정」과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※ 경기도의 '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'에도 불구하고 복수 시·도에 소재한 대학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'초광역 과제(COSS, SCOUT를 포함한다)'의 집행 내용에 관하여서는 동 지침과 초광역 과제 협의체 자체 세부 기준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※ 동 지침에도 불구하고 '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과제'에 한하여 첨부 3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과제 운영기준을 우선 적용하며, 첨부 3의 운영기준 외 내용은 본 지침을 따름
사업비 관리 (4쪽)	(추가) ○ 사업비는 대학본부 또는 산학협력단 등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※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과제 추진 및 대학산학협력단지 과제 추진을 위해 교부된 예산, 초광역 과제 예산은 경기도 앵커 기본계획에 따라 수주한 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운영 ※ 앵커 단위과제 성격을 고려하여 과제별 회계를 선택할 수 있으나, 대학산학협력단지 과제 및 '초광역 과제' 중 COSS-SCOUT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하여야 함
사업비 편성·집행 (8쪽)	(현재) ○ 항목별 편성 비율에 맞추어 예산 편성·집행 - 인건비,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및 간접비에 대해, 지원 대상별 협약하여 직접 집행·관리하는 당해연도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아래의 편성 비율 표에 따라 예산 편성·집행

	<table border="1"> <tr> <th>총 사업비 규모</th><th>10억 원 미만</th><th>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</th><th>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</th><th>200억 원 이상</th></tr> <tr> <td>인건비</td><td>30% 이내</td><td>25% 이내</td><td>20% 이내</td><td>15% 이내</td></tr> <tr> <td>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</td><td colspan="4">5% 이내(단, 간접비를 별도 편성하는 경우 3% 이내)</td></tr> <tr> <td>간접비</td><td colspan="4">3% 이내(산학협력단 회계 또는 법인회계에 한해 편성 가능)</td></tr> </table>	총 사업비 규모	10억 원 미만	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	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	200억 원 이상	인건비	30% 이내	25% 이내	20% 이내	15% 이내	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	5% 이내(단, 간접비를 별도 편성하는 경우 3% 이내)				간접비	3% 이내(산학협력단 회계 또는 법인회계에 한해 편성 가능)														
총 사업비 규모	10억 원 미만	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	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	200억 원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건비	30% 이내	25% 이내	20% 이내	15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	5% 이내(단, 간접비를 별도 편성하는 경우 3% 이내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간접비	3% 이내(산학협력단 회계 또는 법인회계에 한해 편성 가능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수정 및 추가) ○ 항목별 편성 비율에 맞추어 예산 편성·집행 - 인건비,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및 간접비에 대해, 지원 대상별 협약하여 직접 집행·관리하는 당해연도 총 사업비(지자체 대응자금 포함)를 기준으로 편성 비율 표에 따라 예산 편성·집행 - 이 때, 총 사업비는 지역별 앵커 계획에 따라 수주한 사업비와 의과대학·초광역 과제(COSS, SCOUT)·대학산학협력단지 사업비를 구분 ※ 단, 초광역 과제 중 SCOUT는 협의체(컨소시엄)의 당해연도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추가) ○ 인건비 편성·집행 비율 - 지역별 앵커 계획에 따라 수주한 사업비는 아래의 구간별 인건비 비율과 계산식에 따라 인건비 편성·집행 <table border="1"> <tr> <th>총 사업비 규모</th><th>10억 원 이하</th><th>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</th><th>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</th><th>200억 원 초과</th></tr> <tr> <td>인건비</td><td>30% 이내</td><td>25% 이내</td><td>20% 이내</td><td>15% 이내</td></tr> <tr> <td>계산식</td><td colspan="4">[각 구간별 사업비 × 해당구간 인건비 비율]</td></tr> </table> - 의과대학의 경우 아래 구간별 인건비 비율과 계산식에 따라 인건비 편성·집행 <table border="1"> <tr> <th>총 사업비 규모</th><th>10억 원 이하</th><th>10억 원 초과</th></tr> <tr> <td>인건비</td><td>30% 이내</td><td>25% 이내</td></tr> <tr> <td>계산식</td><td colspan="2">[각 구간별 사업비 × 해당구간 인건비 비율]</td></tr> </table> - 초광역(COSS, SCOUT)·대학산학협력단지 과제는 아래 인건비 비율을 따름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<th>과제별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편성 비율</th></tr> <tr> <td>COSS</td><td>COSS 과제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40% 이내</td></tr> <tr> <td>SCOUT</td><td>SCOUT 과제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25% 이내</td></tr> <tr> <td>대학산학협력단지</td><td>대학산학협력단지 과제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20% 이내</td></tr> </table>	총 사업비 규모	10억 원 이하	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	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	200억 원 초과	인건비	30% 이내	25% 이내	20% 이내	15% 이내	계산식	[각 구간별 사업비 × 해당구간 인건비 비율]				총 사업비 규모	10억 원 이하	10억 원 초과	인건비	30% 이내	25% 이내	계산식	[각 구간별 사업비 × 해당구간 인건비 비율]		구분	과제별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편성 비율	COSS	COSS 과제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40% 이내	SCOUT	SCOUT 과제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25% 이내	대학산학협력단지	대학산학협력단지 과제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20% 이내
총 사업비 규모	10억 원 이하	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	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	200억 원 초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건비	30% 이내	25% 이내	20% 이내	15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산식	[각 구간별 사업비 × 해당구간 인건비 비율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사업비 규모	10억 원 이하	10억 원 초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건비	30% 이내	25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산식	[각 구간별 사업비 × 해당구간 인건비 비율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과제별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편성 비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OSS	COSS 과제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40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SCOUT	SCOUT 과제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25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학산학협력단지	대학산학협력단지 과제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20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추가) ○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및 간접비 편성·집행 비율 - 아래의 비율에 따라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·간접비 편성·집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사업비
편성·집행
(8쪽)

사업비
편성·집행
(9쪽)

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</th><th>간접비</th></tr><tr><td>앵커</td><td>5% 이내 (단, 간접비 별도 편성시 3% 이내)</td><td>3% 이내</td></tr><tr><td>의과대학</td><td>5% 이내 (단, 간접비 별도 편성시 3% 이내)</td><td>3% 이내</td></tr><tr><td>COSS</td><td>10% 이내</td><td>3% 이내</td></tr><tr><td>SCOUT</td><td>5% 이내</td><td>5% 이내</td></tr><tr><td>대학산학협력단지</td><td>5% 이내</td><td>3% 이내</td></tr></table> ※ 단, 간접비의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 또는 법인회계에 한해 편성 가능	구분	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	간접비	앵커	5% 이내 (단, 간접비 별도 편성시 3% 이내)	3% 이내	의과대학	5% 이내 (단, 간접비 별도 편성시 3% 이내)	3% 이내	COSS	10% 이내	3% 이내	SCOUT	5% 이내	5% 이내	대학산학협력단지	5% 이내	3% 이내
구분	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	간접비																	
앵커	5% 이내 (단, 간접비 별도 편성시 3% 이내)	3% 이내																	
의과대학	5% 이내 (단, 간접비 별도 편성시 3% 이내)	3% 이내																	
COSS	10% 이내	3% 이내																	
SCOUT	5% 이내	5% 이내																	
대학산학협력단지	5% 이내	3% 이내																	
사업비 편성·집행 (9쪽)	(현재) ○ 대학 총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, 운영규정, 교육부 및 경기도 앵커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등의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(추가) ○ 대학 총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, 운영규정, 교육부 및 경기도 앵커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등의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※ 단, '초광역 과제' 관련 사항은 필요시 경기도앵커센터와 협의																		
사업비 변경 (10쪽)	(현재) ○ 사업비 항목 간 변경 시 항목별 편성 비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 불가 (수정) ○ 사업비 항목 간 변경 시 항목별 편성 비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성과급 및 간접비는 상한을 초과한 증액 불가																		
사업비 이월 (12쪽)	(현재) ○ 원칙적으로 RISE 사업비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(추가) ○ 원칙적으로 앵커 사업비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※ 대학산학협력단지 과제에서 건축 및 장비구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이월금은 교육부 승인 하에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음																		

사업비 정산 및 반납 (13쪽)	(현재) ○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는 반납 (수정) ○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는 보조금 보조비율 대로 국고와 지방보조금으로 반납
인건비 (17쪽)	(현재) ○ 보직수당과 성과급 합산액은 사업비 총액의 5% 범위, 연간 1인당 최대 1,000만원(합산기준)을 초과하여 계상·집행 불가 (추가) ○ 보직수당과 성과급 합산액은 사업비 총액의 5% 범위, 연간 1인당 최대 1,000만원(합산기준)을 초과하여 계상·집행 불가 ※ 단, '초광역 과제' 중 COSS의 경우, 성과급을 연간 1인당 최대 1,500만원 범위 이내에서 계상·집행 가능(초광역 과제 협의체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, 초광역 과제 협의체 주관대학에서 관리하여야 함) - 대학은 성과급 지급 시 (첨부 2)「인센티브 집행 체크리스트」를 작성하여 5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, 매 사업연도 종료 시 교육부 및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
장학금 (19쪽)	(현재) < 주요 집행 제한 항목 > ▶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▶ 학자금 보조 성격이 아닌 생활비 보조 성격의 장학금 ▶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 (수정) < 주요 집행 제한 항목 > ▶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▶ 학자금 보조 성격이 아닌, 생활비 보조 성격의 장학금(근로장학금에 한하여 집행 제한 항목 제외) ▶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
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 (20쪽)	(추가) ※ '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과제'에 한하여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 지원금 중 생활지원금은 일반 장학금과 구분하여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로 편성·집행하며, 첨부3의 지원대상·지급요건·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

교육·연구 환경개선비 (21쪽)	(현재) ○ 교육·연구 환경개선비는 RISE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강의실, 실험실, 실습실 등 ~ 인프라 조성에 사용되는 사업비 항목임 < 주요 집행 제한 항목 > ▶ 토지의 매입, 건물의 신축·증축·개축 비용 ▶ 사업과 무관한 환경개선 비용(예. 캠퍼스 조경, 보도블록 교체, 학생회관 리모델링, 조명, 광장조성 등) (수정 및 추가) ○ 교육·연구 환경개선비는 경기도 앵커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강의실, 실험실, 실습실, 도서관 등 ~ 인프라 조성에 사용되는 사업비 항목임 ○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음 - 시스템 구축 용역비 또는 시스템 관련 기자재 구입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< 주요 집행 제한 항목 > ▶ 토지의 매입, 건물의 신축·증축·개축 비용 ※ 단, 대학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서상 명시된 경우 대학산학협력단지 조성 사업비에 한하여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통한 비목변경 후 건물의 증축 비용 집행 가능 ▶ 사업과 무관한 환경개선 비용(예. 캠퍼스 조경, 보도블록 교체, 학생회관 리모델링, 조명, 광장조성 등)
실험·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 (23쪽)	(현재) ○ 3천만 원 이상의 장비·기자재 구입 시, 금액별로 활용 계획서에 대해 아래의 절차와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함 - 단가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(협의체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중앙앵커센터의 사전 승인 필요 (추가) ○ 3천만 원 이상의 장비·기자재 구입 시, 금액별로 활용 계획서에 대해 아래의 절차와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함 - 단가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(협의체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중앙앵커센터의 사전 승인 필요 ※ 단, '초광역 과제' 중 COSS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의 장비·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, 초광역 과제 협의체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중앙앵커센터의 사전 승인 필요

	- 연구시설·장비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·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(검수완료)하여야 함. 다만, 연구시설·장비의 구축이 여러 사업연도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에는 구축이 완료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도입 기한을 적용할 수 있음 -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 및 기자재는 중요재산으로서,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(보고, 공시, 처분 제한 등)하여야 함
간접비 (30쪽)	(현재) ○ 간접비는 사업 목적과 무관한 인건비 또는 경상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, 최초 귀속 이후에는 변경 또는 증액이 불가 (수정) ○ 간접비는 사업 목적과 무관한 인건비 또는 경상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음
[첨부1]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항목 (31쪽)	(추가) 경기도 앵커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31쪽 참조
[첨부2] 인센티브 집행 체크리스트 (33쪽)	(추가) 경기도 앵커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33쪽 참조
[첨부3]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과제 운영기준 (34쪽)	(추가) 경기도 앵커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34쪽 참조